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일: 2025년 8월 21일, 이연희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11. 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3회국회(임사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3회국회(임사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3.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연희의원)

이 개정 법률안은 2025년 8월 21일 본 의원 외 15인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은 기록성과 예술성을 함께 지닌 매체로서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와 영상산업,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진 분야는 문화예술 및 산업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사진작가의 권익 보호, 저작권 관리, 전문인력 양성, 공공기록물로서의 사진 보존 등은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사진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며, 나아가 국가 문화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진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사진 및 사진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문학, 미술, 국악 분야와

같이 개별 법률로 정하려는 것으로, 사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진 진흥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진 분야의 진흥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이 제19대,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며, 제21대 국회 심사 시 사진이 독립적인 예술 분야로서 인정받고 장르 종사자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과 사진은 시각예술의 일종으로 제정안에 포함된 사진에 대한 지원내용이 「미술진흥법」에 이미 반영된 측면이 있어 별도의 법을 제정할 실익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임오경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 음.